

연세대학교 BK21플러스 패키징 교육연구팀 운영 내규

2021. 03. 30 제정

2022. 06. 01 1차 개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BK21플러스(이하 BK) 사업과 관련하여 “포장재 저감·자원화를 위한 지속가능 패키징 교육연구팀”(이하 교육연구팀)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연구팀의 전반적인 운영과 참여인력의 선정과 변경, 지원 및 임무에 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 기간과 범위)

본 규정의 적용 기간은 BK 사업기간의 종료시점으로 하며, 교육연구팀의 사업 운영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규정이 상위 기관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이상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조(교육연구팀의 구성)

1. 교육연구팀은 패키징학과의 BK 사업 참여의 기준 요건에 준하는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행정전담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2. 교육연구팀은 교육연구팀장 및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4조(교육연구팀장)

1. 교육연구팀장의 임기는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6개월 이상의 연구년 및 파견 등의 연구 활동 등으로 인한 부재,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 교육연구팀장은 참여교수의 진출입 관리, 신입교수 총원 요청, 신진연구인력 채용 등의 인사 권한을 가진다.
3. 교육연구팀장은 교육연구팀의 예산운영 및 조정, 참여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및 성과급 조정 등의 예산 권한을 가진다.
4. 교육연구팀장은 참여 학과(학부 및 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 대학원생 모집인원 증원 요청 등의 학사 관련사항을 학과장 혹은 대학원 전공주임교수와 협의한다.
5. 교육연구팀장은 참여교수 간 협력체제, 미참여 교수와 지도학생에 대한 지원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교육연구팀장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사업 집행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심의 및 결정한다.
7. 교육연구팀장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 시 별도로 명시할 수 있다.

제 5조(운영위원회)

1. 교육연구팀의 효율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체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연구팀 참여교수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연구팀장이 된다.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장의 추천과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안별 임시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팀장을 포함한 소속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사안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연구팀 운영 전반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① 사업단 운영 내규의 제정 및 개정
- ② 참여교수의 변경
- ③ 참여학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임명, 제명 및 상벌,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
- ④ 학기별 사업 방향 및 세부 업무 계획의 수립
- ⑤ 사업의 중간 결과 점검 및 후속 조치 시행
- ⑥ 재정 및 행정 지원의 관리와 검토
- ⑦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 6조(교육연구팀 참여교수)

1. 참여교수는 최초 사업계획서에 참여한 4명의 패키징학과 전임교원으로 하며, 신규 참여교수의 경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추가할 수 있다.
2. 참여교수의 변경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참여교수가 연구년 중이거나, 6개월 이상의 장기해외출장 중에 있을 경우, 해당기간 동안 학생지도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교육연구팀장의 허가를 받아 교육 연구팀에 참여할 수 있다.
4. 참여교수는 교육연구팀의 연구실적 목표치 달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 7조(신진연구인력)

1. 교육연구팀의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육연구팀의 예산으로 박사학위를 소지한 박 사후연구원 및 계약교수(이하 신진연구인력)를 채용할 수 있다. 계약교수는 박사후연구원 1년 이상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며, 임용에 관한 제반 사항은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고용 계약은 최소 1년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며, 계약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신진연구인력은 교육연구팀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계약 기간이 종료된 신진연구인력의 재계약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계약기간 중 달성한 연구업적을 평가하여 결정한다.

제 8조(참여대학원생)

1.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패키징학과 대학원 전일제 석사과정, 박사 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을 의미한다.
2. 참여대학원생은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BK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참여대학원생은 BK 사업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교육연구팀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참여대학원생은 전일제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여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적격 및 비전일제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참여대학원생을 사업에서 제외하고, 사업팀장은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을 즉시 환수할 수 있다. 자격증 대여 등 부적격 및 비전일제 학생 처리에 관한 사항은 「BK21플러스 사업 참여 대학원생 자격 기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 9조(참여대학원생의 자격과 선정, 변경)

1. BK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패키징학 전공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의 대학 원생으로 하며, 석사과정은 4학기 이내, 박사과정은 8학기 이내, 석박사통합과정은 12학기 이내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참여대학생은 BK 사업 관리운영 지침이 규정하는 전일제 학생이어야 한다.

2. 교육연구팀은 매 학기 초(3월 초, 9월 초)에 참여대학원생을 선정할 수 있다. 위 1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BK 사업 참여교수의 지도학생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참여대학원생을 선정한다.
3.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 변경, 입학, 졸업, 취업, 휴학,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연구 팀장의 변경 조치, 기타 사유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4. 참여대학원생이 변경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위 1항의 조건에 의한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변경사항을 산학협력단에 변경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학기 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

제 10조(참여대학원생의 장학금)

1. 교육연구팀의 참여대학원생은 BK 사업 관리운영 지침이 규정하는 연구장학금을 지급받는다.
2. 참여대학원생의 장학선정 기준은 BK 참여대학원생의 성적, 조교 업무 수행, 논문 발표 및 게재 실적, BK 교육연구팀이 주최하는 워크샵 및 특강 참여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한다.
3. BK 연구원의 연구 장학금으로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지급한다.
 -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석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70만 원 이상
 -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 통합과정생 : 월 130만 원 이상
4. 단, 개인적 사유(예: 해외출국, 병가 등)로 연속하여 4주를 초과하여 연구 및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와 지도교수가 연구 및 교육활동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한국연구재단 운영규정에 의거 해당 기간만큼 연구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1조(참여대학원생의 의무)

1. 참여대학원생의 여부는 제 9조 2항에 명기된 바와 같이, 매 학기 결정되며, 결정된 참여대학원생 자격은 임의에 따라 변경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참여대학원생으로 결정된 대학원생은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학기 중 참여대학원생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교육연구팀의 제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2.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연구 및 교육활동에 전념하여야 한다. 이때, 수업과 조교 업무 시간은 교육활동에 포함된다.
3. 참여대학원생 중 BK 장학금을 지원받는 학생을 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은 1년간 자격이 유효하며, 결원 시 즉시 선발할 수 있다.
4. BK 장학금을 지급받는 참여대학원생은 수업 및 연구조교, 행정조교 등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참여대학원생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성실히 학업 및 연구에 매진하여야 하며, 교육연구팀에서 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6. BK연구장학금을 지원받는석사과정생의 경우 매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실적 중 최소 2개 이상, 박사과정생의 경우 ④ 국제학술지 논문 투고 또는 게재를 포함하여 매년 3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달성하여야 한다.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BK연구장학금의 지원 자격을 상실한다. 단, 동일논문의 투고또는 게재는 1건으로 인정한다.
 - ①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학회가 주최하는 국내학술대회 발표
 - ② 국제학술대회 발표
 - ③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 이상의 국내학술지 논문 투고 또는 게재
 - ④ 국제학술지 논문 투고 또는 게재
 - ⑤ 국내외 특허 출원 또는 등록

제 12조(참여인력의 연구 활동 지원)

1. BK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이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전시회 및 세미나에 참석할 경우 등록비와 교통비, 식대, 일비, 보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2. BK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이 해외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교육부의 규정에 따라 BK 사업 예산에서 소요경비(항공료, 숙박비, 식비, 보험료 등)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참여교수의 단독 참여 지원은 해당되지 않으며, 연간 1인당 1회 지원에 한하며, 총 금액이 200만원을 넘지 않는다.
3. BK 참여대학원생이 해외학술대회 참여 경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학술 발표의 제 1저자로서 학술 발표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4. 지원을 받은 참여인력은 학술대회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하고, 지원금을 사용한 증빙서류와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장기 또는 단기 기술연수, 기술교류 등을 목적으로 BK 참여대학원생을 해외 대학 등의 기관에 보낼 수 있으며, 대상학생의 선발은 학술지 논문게재, 특허 출원 및 등록, 학술대회발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며, 필요시 참여교수의 추천으로 선발할 수 있다.
6. BK 참여연구원이 논문투고 및 게재에 필요한 논문교정비용과 논문게재료 등을 실비기준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13조(성과급 지급)

1. 교육연구팀의 사업 참여 및 기여, 성과를 높이기 위해 매년 참여교수와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에게 연구, 교육, 봉사 활동에 따른 차등적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2. 참여교수의 성과급 지급은 「패키징교육연구팀 성과급 지급 규정」의 기준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3. 참여대학원생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편수와 게재학술지의 등급, 특허 출원 및 등록 등을 고려한 연구성과와 학술대회 논문 발표 및 행사 참여 봉사 활동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최우수 및 우수 연구활동상을 시상한다.

제 14조(해외 연구자 초빙)

1. 해외 연구자 초빙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될 수 있다.
 - ① 사업단 주최 학술행사
 - ② 사업단 참여교수진과 공동연구 프로그램
 - ③ 교환강의 프로그램
 - ④ 공동강의 프로그램
 - ⑤ 기타 국제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운영위원회가 판단하는 사업
2. 해외연구자 초빙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급하며 지급액은 예산운용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15조(교육 지원 사업)

1. 교육연구팀은 워크숍, 특별 세미나, 월례 발표회, 콜로키엄 등의 방식으로 학생들이 정규 수업 이외의 형식으로 최신 학문 경향을 배우고, 국내외 학자들과 학문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이러한 행사를 개최시 필요한 강사료, 강의실 임대료, 회의비, 다과비 등 행사진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 16조(규정의 개폐)

1. 교육연구팀 운영 규정의 개정 발의는 교육사업팀장 또는 참여교수 1/3이상의 요청으로 한다.
2. 교육연구팀 운영 규정의 개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의결은 참여교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교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7조(기타)

1. 상기 운영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관련 지침에 따른다.
2. 상기 운영 규정에 상술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1. (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결정 수행한 모든 사업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